

사고 대응 매뉴얼

2025. 03.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목 차

I. 개요	3
1. 목적	3
2. 적용범위	3
3. 사고대응 기본지침	3
4. 학생 인권보호 지침	3
5. 대학의 안전관리 체계	4
II. 교내실습 관련 안전관리 체계	5
1. 비상연락망 체계	5
2. 급여 청구를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	6
3. 교내실습 관련 안전관리	6
III. 임상실습 관련 안전관리 체계	8
1. 비상연락망 체계	8
2. 급여 청구를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	8
3. 임상실습 관련 안전관리	8
IV. 화재발생 시 대응	11
1. 화재발생 초기의 조치사항	11
2.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1
3. 화재 시 유독가스 대피요령	11
V.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12
* 양식	13
1. 사고경위서	13
2. 공제급여 청구서	16

I. 개요

1. 목적

- 교내실습, 임상실습, 교내활동, 교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교내실습
- 임상실습
- 교내활동
- 학과 관련 교외활동

3 사고대응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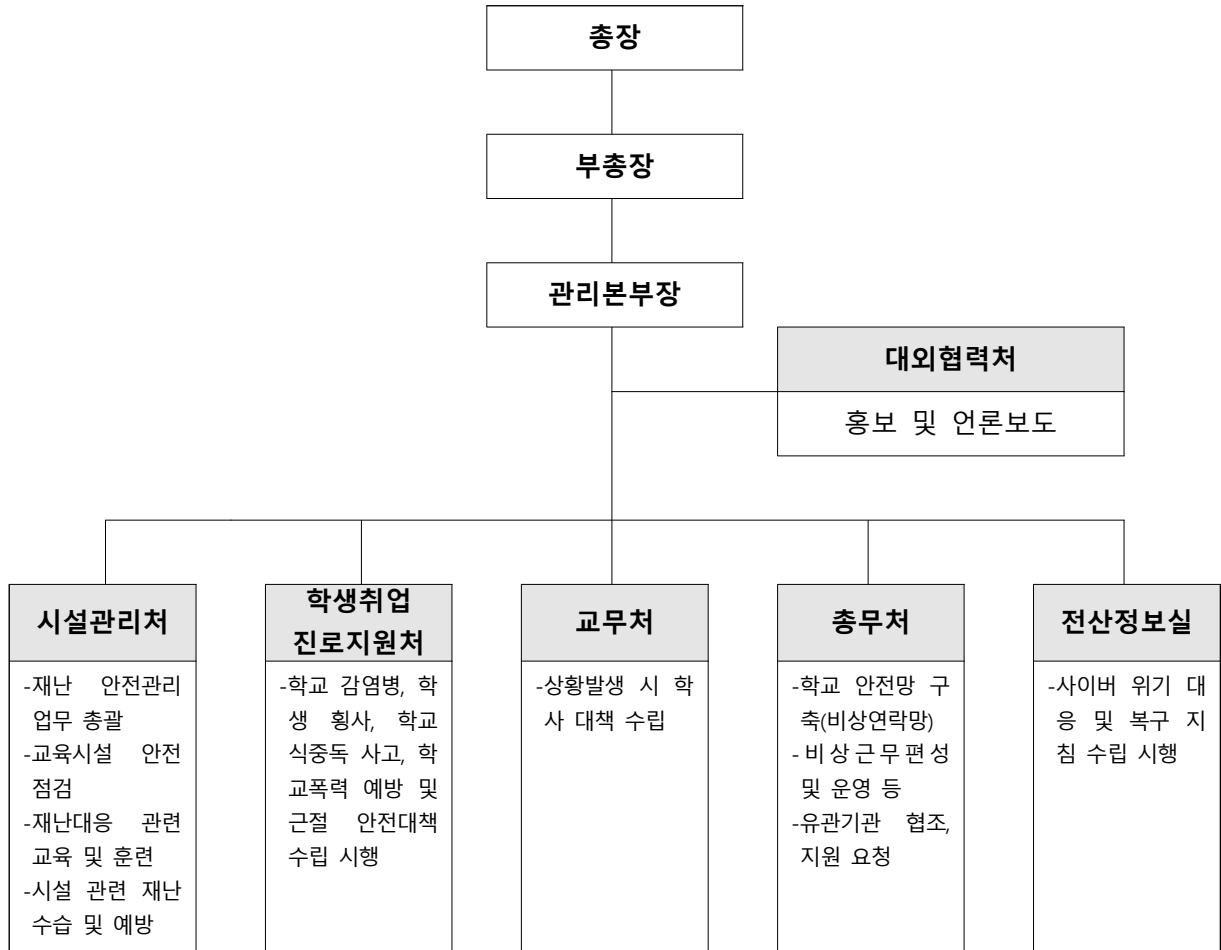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한다.
- 필요한 경우 대학 또는 학과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4. 학생 인권보호 지침

-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병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관련 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체벌, 폭력(성폭력 포함),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실습환경에서 실습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은 실습기관에서의 역할과 실습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학생은 실습 시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학생의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 모형으로 대체하여 실습해야 한다.
- 지도교원은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지도교원은 언어, 임신, 병력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지도교원은 학생이 실습 중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 학과는 실습 교육 시 학생과 실습 대상자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 및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 학생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실습지도교원은 학과장에게 보고하며, 학생지도위원회 또는 실습지도위원회와 교수회를 거쳐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대학이나 실습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5. 대학의 안전관리 체계

- 안전관리 조직도



00관 000호
00실습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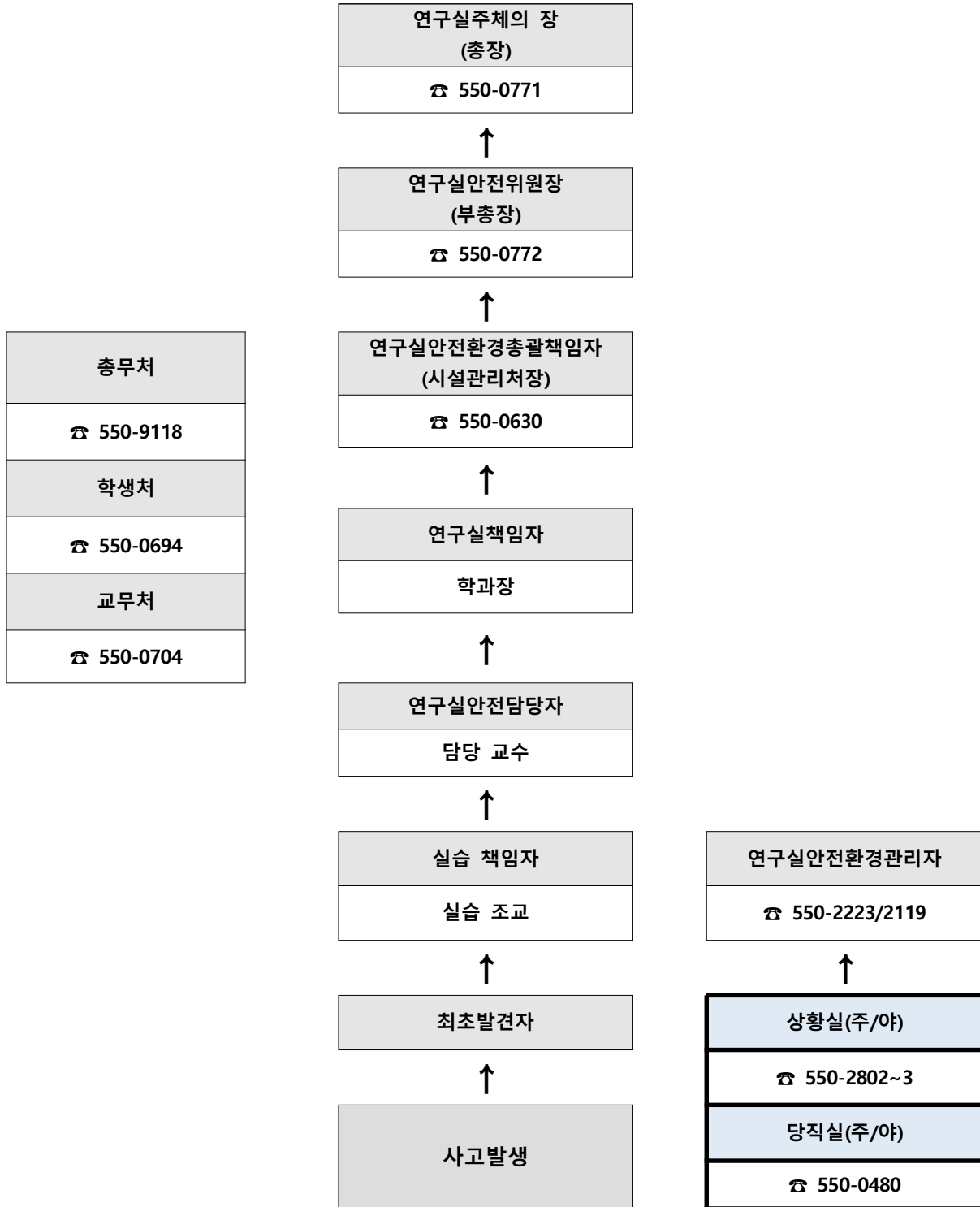
비상연락망

종합상황실
041-550-2802(3)



Ⅱ. 교내실습 관련 안전관리 체계

1. 비상연락망 체계



2. 급여 청구를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

- 사고발생시 최초발견자는 실습조교 및 실습지도교원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다.
- 해당 실습지도교원은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해당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자비로 처리한 후 연구실안전공제 공제급여청구서(간호학과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와 교내실습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인 통장 계좌번호,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실습조교에게 제출한다.

3. 교내실습 관련 안전관리

1) 실습실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전

- 학생은 실습 이외의 목적으로 실습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실습실 내에서는 관리자의 지시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반드시 실습가운을 착용한다.
- 신발은 단화나 운동화를 착용한다.
- 실습실 내로 음료수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
- 살습과 관련 없는 날카로운 물품,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은 반입, 소지하지 않는다.
- 간호학과 사고대응 매뉴얼 및 실습지도교원의 사용 전 교육내용을 숙지한다.

■ 사용 중

- 핸드폰은 실습 중에 사용하지 않는다.
- 실습 시 잡담, 장난스러운 언행, 기구파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 실습기자재 사용 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이상시 관리자(실습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에게 즉시 알린다.
- 관리자(실습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의 지시 없이 함부로 기자재를 변경, 작동하지 않으며, 실습이외의 기자재, 약물, 물품을 만지지 않는다.
- 공해물질은 반드시 회수통을 이용하여 회수하고, 폐수는 정해진 폐수구를 이용하여 배출한다, 특히 진한 산, 염기, 또는 유기용매를 싱크대에 버리지 않는다.
- 유독성 약품은 glove,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루어야 하며 약냄새는 함부로 맡지 않는다.
- 실습실 사용 중 자기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사고를 예방한다.

■ 사용 후

- 실습실을 청결히 유지하며, 실습 후 오염물 및 주사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 실습 종료 후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자율실습 후에는 반드시 자율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 실습기자재는 사용하기 전 상태로 복귀시킨다.
- 학생은 실습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의 허락 없이 실습관련 소모품이나 물품을 실습실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다.
- 실습실내에서의 의문 사항은 관리자(실습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에게 문의한다.

■ 관리

- 실습조교는 매월 말에 실습실 기자재 및 소모품 상태를 파악하고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2) 실습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① 응급환자 발생

- 최초 발견자가 119 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으로 후송한다.
- 필요한 경우 119 도착 전에 응급조치를 한다.
- 담당 교원이나 주변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② 주사바늘 찔림

- 주사기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 바늘이 사용자 몸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며, 바늘을 구부리지 않는다.
- 맨손으로 바늘을 만지지 않는다.
- 사용한 바늘은 Recapping 을 금지하며 손상성 폐기물 전용용기에 분리하여 버린다.

③ 앰플, 바이알로 인한 손상

-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앰플, 바이알을 사용한다.
- 잘못된 방법으로 앰플을 절단하면 유리 파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앰플에 표시된 점이 앞으로 오도록 잡아 절단한다.
- 사용한 앰플, 바이알은 반드시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다.

④ 전기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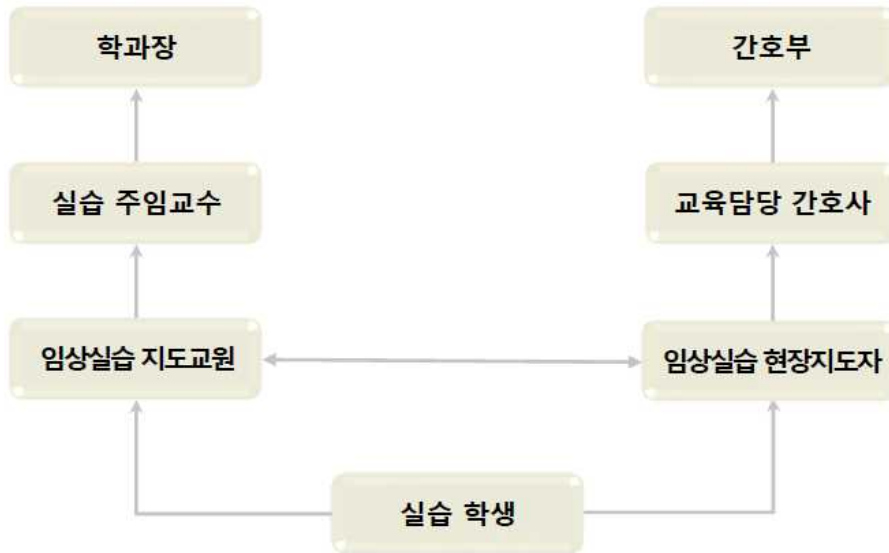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전기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코드 사용은 금지한다.
- 실습 중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실습지도교원에게 알려 수리하도록 한다.
- 실습 관련 기계 및 물품 이외의 제품의 사용은 금한다.

⑤ 기타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예방, 관리 및 대응한다.

Ⅲ. 임상실습 관련 안전관리 체계

1. 비상연락망 체계



2. 급여 청구를 요하는 사고 발생 시 처리 과정

- 학생은 사고발생시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다.
- 학생은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전화로 보고한다.
- 해당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 학생은 실습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자비로 처리한 후 연구실안전공제 공제급여청구서(간호학과 커뮤니티에서 다운로드)와 임상실습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인 통장 계좌번호,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실습조교에게 제출한다.

3. 임상실습 관련 안전관리

1) 실습 전 준비사항

- 안전교육을 이수한다(6 시간 온라인 교육).
- 건강진단확인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한다.
-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한다.
- 매 학기 Chest x-ray 검사 및 결과지를 제출한다.
- 간호학과 사고대응 매뉴얼 및 실습지도교원의 실습 전 교육내용을 숙지한다.
- 기타 사항은 실습기관별 요구사항에 따른다.

2) 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수,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간호사,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임상실습 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 실습요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 병원관계자 및 환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한다.

- 언제 어디서나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① 낙상사고 예방

- 입원 시 또는 노인, 어린이, 무의식, 불안정, 수술직후에 흔히 발생한다.
- Stretcher car 이송 시 side rail 을 반드시 올린다.
- Wheel chair 사용법을 숙지한다.
- 항고혈압제, 진정제, 항우울제, 이노제 복용환자의 이동시 주의를 기울인다.
- 복도, 병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고려하여 주의하고, 지침을 준다.

낙상 예방

Falls Prevention

낙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예방 활동 수행

낙상 형태



떨어짐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면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방법을 교육한다. •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는 보행기구나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한다.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 난간은 항상 올려둔다. • 환자가 출입하는 곳에는 안전바를 설치한다. •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 환자가 다니는 곳에는 조명을 밝게 한다.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위험환자에 대한 정보를 직원간 공유한다. • 낙상사고 발생사태를 공유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 낙상 예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② 화상사고 예방

- 더운물 주머니 물의 온도는 46~52℃를 유지한다.
- 어린이, 노인, 무의식, 순환 장애자에게는 금기이다.
- 물의 양은 주머니의 1/2~ 2/3 을 채우고, 반드시 덮개로 싸서 사용한다.

③ 투약사고 예방

- 5Rights(drug, dose, route, time, patient)를 지킨다.
- 처방을 확인하고 의문시 재확인을 한다.
- 투약지시는 의사의 입력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 준비한 간호사가 투약하고, 복용여부를 확인한다.
- 약의 변색, 유효기간, 불분명한 label 을 확인한다.
- 주의가 필요한 약물 투여 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 IV 주입 시 swelling 이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 조직괴사 일으키는 약품은 IV route 를 재확인한다.
- 항생제 주입 시 피부반응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행한다.
- 정맥주입 시 주입속도를 준수한다.

④ 수혈사고 예방

- X-matching 검체는 채혈자와 확인자가 함께 서명한다.

- 불출된 혈액의 혈액형과 혈액종류, 혈액번호, 이름, 나이 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 수혈카드를 확인한다.
- 수혈목적,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다.
- 활력징후를 기록하고, 수혈이 끝나면 환자 상태를 기록한다.

⑤ 감염관리지침

- 감염관리를 위하여 임상실습 전 Chest X-ray(매 학기)와 예방접종(A 형간염, B 형간염, 수두, MMR)을 시행한다.
- 손씻기 : 병원 감염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원칙에 따라 반드시 준수한다.



- 호흡기 에티켓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 날 때 손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거나 소매로 가린다.
- 장갑
 - 혈액, 체액, 분비물,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에 착용한다.
 - 1회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 후 즉시 벗는다.
- 무균술 준수
 - 요로카테터, 말초혈관 카테터 삽입 시 감염관리지침 준수한다.
 - 알코올을 빨리 건조시키기 위해 입으로 불거나 손으로 부채질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실습 병원 규정에 따른다).
 - 병원성 쓰레기(적출물 쓰레기통) : 거즈, 알콜솜, 향암제, 검체가 담긴 검사 용기, 주사기, 수액병, 수액세트, 앰플병, 약품병 등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모든 쓰레기
 -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쓰레기 : 병원규정에 따라 날카로운 물품: 주사침, 칼날 등은 별도의 안전 폐기용기에 처리. MRSA 등 균감염이 있는 환자에게 나온 모든 쓰레기는 따로 모아 처리 (병원규정에 따른다)
- 격리병실 출입 시 개인보호구 착용과 제거 준수한다.
 - 특히, 공기매개감염질환자(활동성 결핵, 홍역, 수두)의 격리병실 출입은 자제하고, 출입 시 주의 지침 확인하고, 개인보호구 착용상태에서 출입한다.
 - 실습생이 감기, 독감, 피부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역격리 환자병실의 출입을 금한다.
- 주사침 찔림이나 날카로운 기구 베임 주의한다.
 - 주사침 전용용기 사용(recap 금지), 혈당체크 후 lancet에 찔리는 경우 주의 등
- 혈액매개감염질환자(HIV 양성, B 형 간염, C 형 간염, 매독)의 혈액 및 체액 노출 주의한다.
- 접촉, 찔림, 눈/입 점막 노출 시 → 노출 즉시 부서실습책임자(학교, 병원)에게 보고한다.

⑥ 기타 안전관리

- 임상실습 기관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서 예방, 관리 및 대응한다.

IV. 화재발생 시 대응

1. 화재발생 초기의 조치사항

- 신속 정확하게 119 로 화재발생 신고를 한다.
- 주변에 있는 물이나 소화기 등을 이용, 신속히 진화 조치한다.
- 전기화재라 판단되면 개폐기 등을 내려 전기흐름을 차단한다.
- 가스화재의 경우에는 가스용 밸브 또는 중간밸브 등을 잠근다.
 - ▶ 소화기 사용 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2.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 화재 시 문이 뜨겁거나 연기가 새어 나올 경우 문은 열지 말아야 한다.
- 실내에 연기가 차면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두꺼운 담요나 이불을 물에 적서 피부를 쓴다.
- 불길의 반대방향에 창문이 있으면 수건이나 옷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를 요청한다.
- 뛰어 내리지 말고 신속히 비상구를 찾아 대피소로 대피한다.

3. 화재 시 유독가스 대피요령

- 연기·가스는 위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몸을 낮추거나 엎드린 자세로 벽을 짚으면서 불난 쪽 반대편 탈출구로 나가야 한다.
- 상층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유독가스의 상승(초당 3~5m 속도)을 피해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화재장소가 아래층이라면 옥상이나 창문으로 피신하여 산소를 공급받도록 한다.
- 유해가스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손수건이나 옷을 물에 적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티슈 15~20장을 물에 적서 호흡기를 막아도 좋다/황사마스크는 분진은 걸러내지만 가스 입자는 통과시키므로 별 효과가 없다).
- 비닐봉지에 공기를 확 불어넣고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호흡하도록 한다(봉지안의 공기로 3~4분 호흡이 가능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다).
- 물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대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삼간다.

■ 대피소



V.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그 누구도 나의 몸과 성적 행동에 대해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나의 느낌을 존중한다.
 - 누군가 나의 신체에 접촉을 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분명히 성폭력이다.
- 분명하고 단호하며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
 - 자신 있게 행동하고 나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에게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적다.
- 타인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표현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 동의는 어떠한 압력이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호간 합의이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
- 술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마신다.
 - 술을 마셨다고 해서 성폭력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
 - 평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성적 범주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내에서 행동하도록 한다.
- 늦은 시간 교내 건물 및 주차장 등지에서의 행동은 주의한다.
 - 밤늦은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건물내외 및 주차장 등지에서 행동은 지양한다.

■ 피해 시 대처 요령

- **성희롱 피해 시**
 - 행위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거나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 보호자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보고 성폭력 상담실에 상담을 요청한다.
- **성폭력 피해 시**
 - 믿을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 증거자료를 보존한다.
 - 증거 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질 세척, 손, 치아 등을 닦지 않는다.
 - 화장실에 가지 말고, 당시 입었던 옷을 없애지 않는다.
 -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는다.
 - 응급 상황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를 이용한다.

**** 양식**

1. 사고 경위서

교내실습 사고 경위서

이 름		학 년		학 번	
주민번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사고 일시		사고장소			
사 고 경 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 습 생 : _____ (인)

실습지도교원 : _____ (인)

학 과 장 : _____ (인)

임상실습 사고 경위서

이름		학년		학번	
주민번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 고 경 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 습 생 : _____ (인)

현 장 지 도 자 : _____ (인)

임상실습지도교원 : _____ (인)

학 과 장 : _____ (인)

학생활동 사고 경위서

이름		학년		학번	
주민번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 고 경 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상기와 같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 _____ (인)

지 도 교 원 : _____ (인)

학 과 장 : _____ (인)

2. 공제급여 청구서

공 제 급 여 청 구 서

□ 계약사항

계약자 명			학교명	
연락처	전화		소재지	
	팩스			
타보험 계약	보험사명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 타보험계약: 피해학생의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상해의료비관련 보험종목을 기입해주세요.

□ 사고자(피공제자) 인적사항

성명		학과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신분	
학번(사원번호)		전화	

□ 사고자 피해 및 청구금액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구분	<input type="checkbox"/> 부상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후유장해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피해내용 (상병명 등)			
청 구 금 액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다음의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p> <p>이에 본인은 다음의 신용정보를 손해사정 및 조사를 위하여 교육 시설재난공제회와 그의 대리인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1) 정보수집대상 : 건강보험공단 등 급여지급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국가기관, 금융기관</p> <p>2) 제공활용내용 : 진료기록, 급여지급내역, 전문가의 소견</p> <p>3) 정보수집방법 : 열람, 대여, 복사, 촬영</p>

증빙/첨부서류 표기	
서류명	매수
사고경위서	
재학(직)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입(통)원확인서or진료확인서	
x-ray 필름(골절 시)	
주민등록등본(장해/사망 시)	
호적등본(장해/사망 시)	
통장계좌사본	
기타	